

2021년 출판콘텐츠 기술개발 지원 사업 지정과제 추진 공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2021년 출판콘텐츠 기술개발 지원 사업 지정과제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본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추진목표

- 소규모 사업자들이 다양하고 우수한 출판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도록 원가분석 및 제작발주를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출판유통·제작발주 등 제반 프로세스에 대한 표준화 시스템을 개발, 업무 효율 극대화

2. 공모내용

과제명	출판물 원가분석 및 제작발주 프로그램 개발[붙임2. 참고]	
공모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과제에 대한 사업계획서 또는 제안서 제출, 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개 지정과제 수행 	
	개수	1개
	지원금액	지원금액(국고) : 최대 140,000,000원(1억 4천만원) * 전체 개발 예산의 15% 이상 수행기관(기업) 부담(사업자 부담금 조건 참조)
신청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8월 12일 ~ 2021년 8월 21일 18:00 (10일간) 	
개발기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9월 협약일 ~ 2022년 2월 28일 	
지정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과제명 : '출판물 원가분석 및 제작발주 프로그램' 개발 • 핵심 개발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목표, 개발내용 등 세부 내용은 지정과제 제안요청서(RFP)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 제작 업무 지원 기능 개발 • 경영지원 및 의사결정 지원 기능 개발 • 마케팅 및 편집/디자인 지원 기능 개발 • 개발 프로그램 유지 보수 추진 	

3. 신청대상 및 조건

- 출판 관련 기술 적용 및 사업화 가능한 기술·콘텐츠 기업
-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만 신청 가능
- 개발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출판유통통합전산망 사업에 참여하는 출판사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함. 이와 관련해서는 추후 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협약 등을 통해 세부 조건을 정하여야 함.
- 출판분야 기술 및 업계를 연구하는 연구기관·민간단체
 - * 2개 이상 기관(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 가능

※ 신청 제외 대상

- ① 신청일 현재 신청기관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관련 각종 협약 또는 계약 위반으로 인해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② 신청일 현재 신청기관(단체)의 장 및 책임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③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 타 기관의 지원 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
- ④ 신청일 현재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신용거래 불량자이거나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 ⑤ 신청일 현재 기관 책임자가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⑥ 대표자, 책임자 또는 보조금수령자가 보조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수급제한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⑦ 신청일 현재 사업자(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과제참여인력, 대표권자,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기소 중인 경우도 포함)

4. 개발 완료 후 후속 사항

- (무료버전 오픈) 개발 결과물은 공공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무료버전의 결과물을 포함하여 개발하고 배포하여야 함. 출판 산업 발전을 위해 출판유통통합전산망에 참여한 출판사가 개발 결과물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교육 실시) 개발된 출판물 원가분석 및 제작발주 프로그램 개발 결과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일선 출판사 실무자를 대상으로 활용 교육을 실시하여 개발 결과물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함. 진흥원 교육사업과 연계 가능함.

5. 보조금 관련 안내사항

- 부정수급 주의 안내
 - 인건비는 총 사업비의 70%를 초과 불가
 - 지원금으로 대표자 인건비는 지출 불가
 - 인건비 중복 수급 금지(타기관 과제 참여율+진흥원 과제 참여율=100% 이상 불가)
 - 용역의 내부거래(친인척 등) 금지
- 사업자부담금 조건

- 전체 개발 예산의 15% 이상을 수행기관(기업)이 부담
 - * 예) 전체 개발 예산이 160백만원인 경우, 진흥원 지원금 140백만원 이외에 24백만원 이상 사업자 부담
- 사업자부담금은 현금으로 부담해야 함
- 사업자부담금을 먼저 집행한 후 진흥원 지원금을 집행해야 함

6. 심사일정



*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7. 선정절차 및 기준

○ 선정 절차

지정과제 공모 선정 심사	
평가 방법	사업계획서 평가
평가 점수	심사위원의 평가점수 총점 +가점
기타 사항	평가점수가 동점일 경우는 '사업계획의 우수성' 항목 점수가 높은 순으로 순위결정 항목점수가 동점일 경우 핵심목표 구현방법→기타개발세부목표→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의 우수성→추진 일정의적정성→기술 개발성과 평가항목·평가방법의 타당 순으로 순위 결정

○ 선정 기준

평가 항목	세부 착안 사항	배점
사업계획의 우수성 (6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목표 구현 방법 • 기타 개발 세부 목표 • 추진전략·방법 및 추진체계의 우수성 • 추진 일정의적정성 • 기술 개발 성과 평가항목·평가방법의 타당성 	60
개발 성과의 활용방안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 성과의 활용성(사업성) • 기대효과 및 경제적 효과 •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및 계획의 구체성 	20
기관 역량의 우수성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 및 참여인력 전문성 • 개발 일정 및 예산 계획 등의 현실성 • 수행기관의 경영 및 재무 건전성 등 이력 	20

○ 가점 사항 및 증명서류

번호	가점사항	가점	증명서류
1	연구책임자가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 등급인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 과제(과제 최종 종료일이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의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인 경우	1점	최종평가 최우수 등급 증명서류 (전문기관 공문 등)
2	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최종평가 결과 우수 연구개발 성과로 선정되어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포상을 받은 연구자인 경우	1점	포상 증명서류
3	연구기관 연구책임자가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 과제의 결과물로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인 경우	1점	기술실시계약서, 기술료 징수 증명서류
4	연구기관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창작연구소 또는 창작연구전담부서로 지정받은 기관인 경우	1점	지정 증명서류
5	연구기관이 영리기업이고 본점이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이외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인 경우	1점	사업자등록증
6	연구기관이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기관인 경우	1점	가족친화인증서

8.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input type="checkbox"/> 신청기간 : 8월 12(목) ~ 8월 21일(토) 18:00 까지
※ 마감 시간 이후 접수 불가 ※ 정보입력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작성기간을 여유롭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제출서류(첨부파일)를 작성하여 이메일 제출(minju@kpipa.or.kr) ※ 접수 완료 시 담당자가 확인 메일을 드립니다. ※ 제출서류 누락 시 추후 보완이 불가하오니, 제출서류를 빠짐없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nput type="checkbox"/>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등 4부			
No	제출서류	제출형식	제출방식
①	사업신청서	스캔파일 (PDF)	○ 신청서 하단 서명란에 <u>회사인감을 날인</u> , 스캔하여 PDF 파일로 제출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이 대표 제출 *파일명 : 01_신청서(주관기관(기업)명).pdf
②	사업계획서	한글파일 (hwp)	○ <u>사업계획서 본문 분량은 제한 없음</u> *파일명 : 02_사업계획서(주관기관(기업)명).hw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이 대표 제출 ○ 각 별첨자료를 zip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 기관(기업)별로 대표자 서명 또는 기관(기업) 직인이 필요한 서류는 날인후 PDF 파일로 스캔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이 참여기관 서류까지 취합하여 제출 *파일명 : 03_별첨자료(주관기관(기업)명).zip
③	기타 별첨자료	압축파일 (zip)	
④	가점사항 확인서 및 증명서류 (해당자에 한함)	스캔파일 (PD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하는 경우, 증명서류를 포함하여 PDF 파일로 스캔하여 제출 ○ 컨소시엄의 경우 주관기관이 참여기관 서류까지 취합하여 제출 *파일명 : 04_가점사항 확인서(주관기관명).pdf

9. 유의사항

○ 기술지원 과제 개발 성과의 소유

- 개발 성과의 소유권은 다음과 같으며, 수행기관(기업)은 컨소시엄 구성 시 상호 간 소유권을 사전에 협의하고 소유권을 고려한 효과적인 개발 성과의 활용 방안(사업화 방안 등)을 제시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형적 성과의 소유 :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 소유로 함.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를 수행한 기관이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유형적 성과의 소유 : 수행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참여기관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국고보조금 운영 관리지침」 및 진흥원의 「보조금 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함.
- 최종 선정된 수행기관(기업)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국고보조금 사용정산」을 준수하여 사업을 진행하며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에 따라 보조금(개발지원금)을 사용해야 함.
- 수행기관(기업)은 연구개발비 집행관리를 위해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고, 동계정과 연결된 과제전용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개발지원금 수행계획서 범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발지원금을 집행할 때에는 증빙자료를 반드시 갖추고 정산보고서 제출 시 이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수행기관(기업)이 개발지원금을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개발비 환수를 포함한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진흥원이나 타 지원기관(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협약체결 이후에라도 협약취소,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제출된 자료는 신청기관(기업)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보완될 수 없으며, 일체

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본 사업의 신청·수행에 있어 위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수행기관(기업)의 책임임.
- 위 사항에 따라 수행기관(기업)에 제재사유 발생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기관(기업)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기타 예외사항에 대해서는 진흥원 보조금관리 지침 및 심사위원회를 통해 결정함.

10. 문의

- 미래산업팀 이민주 대리(☎ 063-219-2753, minju@kpa.or.kr)

2021. 8. 12.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